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2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통령령 제3200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1항 중 “법 제50조제3항제1호”를 “법 제50조제4항제1호”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21조의4 중 “법 제50조제4항”을 “법 제50조제5항”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을 “다음 각 호의 운송사업자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21조의5 및 제21조의6을 각각 제21조의6 및 제21조의11로 하고, 제2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5(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21조의4에 따른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유류를 구매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유류(油類)일 것
2.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않을 것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운행할 것
4.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받을 것
5. 해당 여객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유류를 구매할 것
6.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단가 등이 실제 주유한 내용과 일치할 것
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의 신용카드업자(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자로 한정한다)가 발행한 같은 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보조금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연료구매카드”라 한다)로 유류를 구매할 것. 다만, 연료구매카드의 분실·훼손·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연료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나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 받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운송사업자가 다른 법령이나 국가 간의 조약·협정에 따라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를 공급받지 않을 것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②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유류의 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유가보조금은 유류를 주유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④ 운송사업자는 연료구매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를 통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 단서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6의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6(중전의 제21조의5) 중 “법 제50조제5항”을 “법 제50조제6항”으로 한다.

제21조의7부터 제21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7(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의4에 따른 운송사업자”는 “제21조의6에 따른 운송사업자”로, “유류”는 “천연가스”로, “유가보조금”은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으로, “주유소”는 “충전소”로, “자가주유시설”은 “자가충전시설”로, “주유”는 “충전”으로, “유류비”는 “천연가스 연료비용”으로 본다.

제21조의8(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전세버스운송사업자
3. 일반택시운송사업자
4. 개인택시운송사업자(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21조의9(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 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의4에 따른 운송사업자”는 “제21조의8에 따른 운송사업자”로, “유류”는 “수소”로, “유가보조금”은 “수소 연료보조금”으로, “주유소”는 “충전소”로, “자가주유시설”은 “자가충전시설”로, “주유”는 “충전”으로, “유류비”는 “수소 연료비용”으로 본다.

제21조의10(자료의 제공) 법 제50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자료
3. 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자료 및 법 제87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에 관한 자료

- 4.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득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관한 자료
- 5.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및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 6. 그 밖에 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21조의11(중전의 제21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0조제7항”을 “법 제50조제9항”으로 한다.
 제21조의12부터 제21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1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① 법 제51조의2제5호에 따라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 1. 법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의 대수나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한 경우
-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 3. 제21조의5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1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법 제51조의3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관하여는 제21조의1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의5제1항 각 호”는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제21조의5제1항 각 호”로, “유가보조금”은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으로 본다.

제21조의14(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 ① 법 제51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제21조의5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5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연료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정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위원회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한다.

- 1.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청의 접수
- 2. 제31조에 따른 감정·진단 등의 의뢰 지원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 3. 제32조제1항에 따른 회의출석과 자료 제출의 요청 통지
- 4. 제33조에 따른 합의서 작성의 지원 및 보조
-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에 관한 업무

제40조제4항 중 “승합자동차”를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승합자동차란 다음에 특수자동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특수자동차	자 동 차 대 여 사 업 용	캠핑용자동차	9년
-------	--------------------	--------	----

별표 2 제2호나목 본문 중 “승합자동차”를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8 및 제21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구매한 수소에 대하여 수소 연료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구매한 유류에 대한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에 관하여는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구매한 유류나 천연가스에 대한 유가보조금 또는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의5 및 제21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797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수소 연료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에 캠핑용 특수자동차를 추가하며,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976호, 2021. 3. 23. 공포, 9. 24. 시행)됨에 따라,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정하고, 그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는 유가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며, 캠핑용 특수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을 3년으로, 차령을 9년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공제분쟁조정신청의 접수, 감정·진단 등의 의뢰 지원,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